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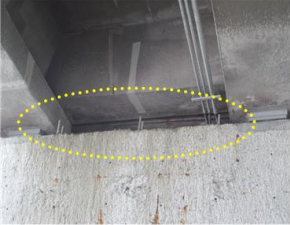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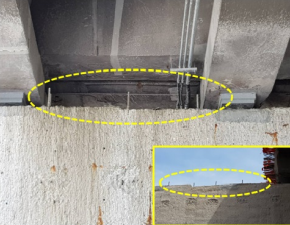
정기(기동점검) 점검 조치결과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 점검일시 : 2018.05.15 (화)
- 조치결과
- ◆ 점검자 : 정진혁, 박수엽

지적내용	점검사진	조치일자	조치사진
		조치내용	
<p>○ 낙하·비래 재해 예방</p> <p>- 수락고가 코핑 하부 철거 부산물이 철선에 매달려 있거나 상단에 방치된 교각은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푸집동바리 설치전에 제거 후 작업요망</p> <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p>		<p>2018.05.20</p> <p>○ 낙하·비래 재해 예방</p> <p>- 수락고가 코핑하부 철선에 매달린 부산물 제거 함.</p> <p>- 교각 코핑상단에 방치된 철거부산물 제거 함.</p>	

<p>○ 거푸집동바리 안전</p> <p>- 수락고가 P6 교각 보강을 위해 성토체 위에 버림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한 상태로 경사부가 일부 세굴되어 있고, 우기시 우수에 의해 지속적으로 세굴될 경우 하부 버림콘크리트에 변형이 발생하여 거푸집동바리 붕괴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p> <p>- 수방대비 세굴된 면을 보수하고 전체적으로 면다짐을 수행한 후 청타지 등을 덮어 관리요망</p> <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51조(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p>		<p>2018.05.19</p> <p>○ 거푸집동바리 안전</p> <p>- 수락고가 P6 버림콘크리트 하부 수방대비하여 세굴된 면을 보수하고 면다짐 후 청타지로 세굴 보호조치 함.</p>	
<p>○ 감전재해 예방</p> <p>- 장암지하차도에 비치된 CO2 용접기의 단자 접속부는 절연테이프 또는 절연카바등을 이용하여 절연조치 바람.</p> <p>※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21(용접작업 및 용접기)</p>		<p>2018.05.19</p> <p>○ 감전재해 예방</p> <p>- 장암지하차도에 비치된 CO2 용접기 단자접속부 절연커버 보완 조치 함</p>	
<p>○ 감전재해 예방</p> <p>- 장암지하차도에 사용 중인 분전함 내부의 콘센트는 외함에 설치하여 내부에서 근로자들이 전기를 인출하지 않도록 관리 바람.</p> <p>※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16(분전반)</p>		<p>2018.05.19</p> <p>○ 감전재해 예방</p> <p>- 장암지하차도에 사용 중인 분전함 내부의 콘센트 철거후 외함에 방수형 콘센트 설치.</p>	

<p>○ 화재/폭발/질식 재해 예방</p> <p>- 장암지하차도 철근조립구간에 비치된 소화기는 게이지가 파손되어 있으니 교체 바람. ※ 건설안전 기본지침 p4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p>		<p>2018.05.19</p> <p>○ 화재/폭발/질식 재해 예방</p> <p>- 장암지하차도 철근조립구간에 게이지 파손된 소화기 폐기 후 소화기 교체 함.</p>	
<p>○ 품질관리</p> <p>- 수락고가 기존 교각에 설치되었던 점검통로 시설 지주 철물을 코핑에 남겨 놓은 상태로 향후 점검통로 신설시 필요 없어 절단된 개소가 일부 있으나 절단시 진동이나 열화로 인해 콘크리트 이음부가 이완될 경우 코핑 품질에 좋지 않으므로 제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요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p>		<p>2018.05.16</p> <p>○ 품질관리</p> <p>- 수락고가 기존 교각에 설치되었던 점검통로 시설 지주 철물을 코핑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거하지 않고 콘크리트 보강 마무리로 보완 예정임.</p>	

<p>○ 품질관리</p> <p>- 수락고가 토공부 방호벽 철근배근 및 거푸집 조립공사는 기초저면에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콘크리트가 타설되어야 하나 거푸집 내부에도 이물질이 남아 있으므로</p> <p>- 거푸집 설치전 바닥청소를 수행하고, 콘크리트 타설전 구간내 이물질을 다시 확인하여 제거하도록 관련 작업자와 협의의 요망</p> <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51조(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p>		<p>2018.05.20</p> <p>○ 품질관리</p> <p>- 수락고가 토공부 방호벽 철근배근 및 거푸집 조립공사전 고압살수기 이용하여 이물질 제거함.</p> <p>- 거푸집 설치전 바닥청소를 2차 실시하여 이물질 제거 함.</p>	
<p>○ 기타 안전관리</p> <p>- 장암지하차도에 있는 위험물저장소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기 바람.</p> <p>①오래되어 식별이 어려운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교체</p> <p>②인양, 운반시 PP로 프 사용금지</p> <p>※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동-24(위험물 보관소)</p>		<p>2018.05.19</p> <p>○ 기타 안전관리</p> <p>① 오래되어 식별이 어려운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교체 함.</p> <p>② 사용하지 않는 PP로 프 제거 함.</p>	